Subject: 상법 개정과 시사점
From Name: Sodali & Co
From Email: info@sodali.com
Reply-to Email: info@sodali.com

Preview Text: 지난 7월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 무, 3% 룰의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의 의무화 등으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와 집중투표는 이번 개정에서 빠졌습니다. 다 만, 논의는 계속 이어 나가기로 하였으므로 그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명시하였고, (2) 사외이사라는 표현은 독립이사라는 표현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3)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중 독립이사의 비중을 1/4에서 1/3로 강화하였고, (4)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을 합산하여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선임 뿐만 아니라 독립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였으며, (5)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충실의무에 관한 조항은 공포후 즉시,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독립이사의 비중 확대는 시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2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독립이사의 비중 확대와 관련하여, 의안분석 회사들의 지침 개정을 유심히 살펴야겠습니다. 특히, 주주구성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회사라면 ISS의 지침 개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Glass Lewis는 기존에도 독립이사 2인 이상, 1/3독립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ISS는 현재 1/4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안분석 회사는 후보 개인의 독립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독립적인지, 독립적이지 않은지를 상법의 기준과 무관하게 정의하는데, 독립이사 후보자가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성 비율을 계산할 때 사내이사로 간주되어 독립성 비율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사내이사 3인, 독립이사 1인으로 운영하던 회사가 독립이사 1인을 추가선임할 때에 독립이사 후보자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ISS가 판단하면, 독립이사의 비중은 1/5, 즉 20%로 간주되고, 사내이사를 포함해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에게 반대를 권고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여 독립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독립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3% 규정의 강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분리선임 감사위원의 선임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행동주의 투자자나 소액주주의 결집 움직임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실의무의 확대로 이사의 의사결정이 주주대표소송 등 분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분할합병 등 주주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영향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해외의 행동주의 투자자들과 이벤트-드리븐 전략을 활용하는 투자 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국내 활동을 확대할 여지가 커졌다고 판단합니다. 달튼 인베스트먼트는 이미 올해 초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였고,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도 올 해 초 한국 담당자 공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 시장 에 개정 상법의 시행에 앞서 이사회의 운영을 포함한 현재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의 리 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달리앤코 한국법인은 국내외 의안분석 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탁월한 기업지배구조 전문성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높은 이해도, 그리고 폭넓은 투자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 및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OUR TEAM**



STANLEY CHUNG
Managing Director
E. stanley.chung@sodali.com



KELLY KIM
Senior Advisor
E. kelly.kim@sodali.com



com

MOONOK BANG
Managing Director
E. moonok.bang@sodali.



YOO SHIN CHOI Senior Associate E. yooshin.choi@sodali.c



DONGBIN PARK
Senior Associate
E. dongbin.park@sodali.

## ABOUT SODALI & CO

소달리앤코(Sodali & Co)는 對주주 서비스 및 기업지배구조 전략 자문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경영활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지를 극대화시키는 데 최적의 동반자입니다. 소달리앤코는 기업지배구조 자문에서부터 ESG 컨설팅, 주주 소통 및 관여활동 지원, 자본시장 정보제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대행, 주주행동주의 자문, M&A 등 구조개편 자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통해 이사회 및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소달리앤코는 효과적인 지배구조 공시, 주주와의 신뢰 관계 구축, 전략적 목표에 대한 지지 기반 극대화 를 통해 고객사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을 목표로 합니다.

뉴욕과 런던에 있는 본사를 포함하여 주요 자본시장 곳곳에 지사를 두고 있는 소달리앤코는, 전 세계 약80개국에서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1,000여 개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한국 시장에 적합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업계에서 소달리앤코가 유일합니다.



OUR SERVICES | INSIGHTS | DEALS & ADVISORY | CONTACT US

info@sodali.com

<u>Unsubscribe</u>

SODALI.COM